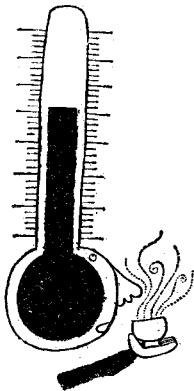


# 公害防止法施行規則

保社部는 지난 8月14日 公害防止法施行令 이 공포된데 이어 施行規則을 9月18日 保社部令 第381號로 公布했다.

全文 15條 附則으로된 이 施行規則은 ①汚染物質의 種類 ②排出施設의 種類 ③大氣, 水質, 騒音, 惡臭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④母法第8條 2項의 규정에 의한“危害急迫 한경우”등을 적시, 公害방지법의 실질적인 핵심을 뒷받침하였는데, 그 全文을 이에 수록한다.



**제1조** (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①공해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 (배출허용 기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첨부서류의 생략) 공해방지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배출시설과 그 생략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영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서류.

2. 별표 2의 “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서류.

3. 별표 2의 “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영 제 2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의 서류

**제 4 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식등) ①영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 (허가증) 영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다.

**제 6 조**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의 신고는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 (배출시설의 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립보건연구원,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위생시험소 기타 기관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기관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정된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별표 3에 의한 오염물질(소음 악취, 매연은 각각 하나의 오염물질로 본다) 마다 검사 수수료로서 1,000원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붙여 지정된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이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검사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조업시간의 제한등) ①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서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황화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의 피해지점 농도가 10피피엠 (PPM) 이상을 1시간 이상 지속할 때.

2. 일산화탄소와 피해지점 농도가 12 피피엠 (PPM) 이상을 1시간 이상 지속할 때.

3. 전 2호 이외의 가스의 피해지점 농도가 그 허용 농도의 10배 이상의 농도를 지속할 때.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해방지관리인) 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해방지 관리인을 두어야할 공장 또는 사업장은 별표 2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 10 조** (공해방지관리인의 선정기준) 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관리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학·약학·기타 이공계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등록을 한 자.
2. 외국의 대학에서 전호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자.
4. 원동기 취급면허를 받은 자.
5. 2년이상 공해방지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6. 전 각호이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공해방지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11 조** (공해방지 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

①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관리인의 관리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유지·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 시설의 정상가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해방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관리인의 준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 시설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공해방지 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직접 정비하거나 공장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정비하도록 할 것.
3. 공해방지 업무일지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공해방지 시설의 관리내용을 기록, 보존할 것.

**제 12 조** (환경위생감시원의 임명·자격 등) ①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학·약학·기타 이공계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
2. 외국의 대학에서 전호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전 2호 이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이상 환경위생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2년이상 환경위생업무에 종사한 자.
5. 전 각호 이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환경 위생감시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환경위생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감시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환경의 오염조사와 오염원인 분석 및 오염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 3 기타 환경보호에 관련되는 사항.

**제13조** (분쟁조정신청)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공해방지협회의 설립)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협회의 설립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오 염 물 질

1. 불소 및 불소화합물
2. 비소 및 비소화합물
3. 벤젠 및 그 유도체
4. 수산화 나트륨 및 수산화칼륨
5. 시안 및 시안화합물
6. 암모니아 및 질소산화물
7. 염소 및 염소화합물
8. 유지, 파라핀류 및 왁스
9. 크롬 및 크롬화합물
10. 탄소화합물
11. 페놀 및 그 유도체
12. 포름 알데히드 및 알데히드 화합물
13. 황화수소 및 황화산 화물
14. 인 및 인화합물
15. 먼지

### 별표 2.

#### 배 출 시 설

#### 가.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 (1) 금속의 용융, 제련, 가공, 표면처리 또는 열처리 시설
- (2) 염료 및 그 중간물, 기타 유기약품의 합성, 제조 가공 또는 정제시설
- (3) 안료 및 도료의 제조, 가공, 또는 정제시설
- (4) 화학섬유의 합성, 제조, 가공시설
- (5) 합성수지 및 고무의 제조 가공시설

- (6) 석유의 정제시설
- (7)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시설
- (8) 비누, 유지 및 왁스의 제조 가공 또는 정제시설
- (9) 염소, 불소, 황산, 염산, 인, 황 및 그 화합물 (황산은 제외)의 제조 또는 정제시설
- (10) 암모니아 및 그 화합물의 제조 또는 정제시설
- (11) 황성탄의 제조시설 또는 연탄의 제조 저장시설
- (12) 유리의 제조 또는 부식 시설
- (13) 전 각호 이외의 시설로서 염소, 염화수소, 이산화황, 이황화탄소, 무수황산, 산화질소 및 불화수소를 발생하는 시설
- (14) 목재, 금속, 석재, 식품 또는 사료의 분쇄 및 가공시설
- (15) 시멘트 및 요업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시설
- (16) 보일러, 전기로 및 기타 로써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 (가)보일러—증발량 1톤 1시간이상, 다만 이동식 보일러는 제외
  - (나)전기 로—500KVA이상
  - (다) 기타로—고체연료 사용량 700kg/일 이상 또는 액체연료 사용량 700ℓ/일 이상

#### 나. 폐 수

- (1) 화학공업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원료 또는 제품의 세정시설
  - (나) 반응시설
  - (다) 합성시설
  - (라) 분해시설
  - (마) 탈수시설
  - (바) 분리시설
  - (사) 침전 또는 여과시설
  - (아) 정출시설
  - (자) 정제시설
  - (차) 축출시설
  - (카) 발효시설
  - (타) 증유시설
  - (파) 회수시설
  - (하) 검화시설
  - (거) 염석시설

- (2) 제철, 제강 또는 압연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압연시설
- (나) 산 또는 알카리 세정시설
- (다) 도금시설
- (라) 가스세정시설

(3) 전 (2) 이외의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금속제품 또는 기계기구의 제조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압연시설
- (나) 산, 또는 알카리 세정시설
- (다) 용제 또는 세제시설
- (라) 전해시설
- (마) 백기시설
- (바) 열처리시설

(4) 석유제품 제조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원료 또는 제품의 세정시설
- (나) 증유시설
- (다) 정제시설
- (라) 산 또는 알카리 처리시설
- (마) 여과시설
- (바) 추출시설
- (사) 분해시설
- (아) 부산물가공시설

(5) 피혁제품제조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침적시설 (나) 염색시설 (다) 세정시설

(6) 식료품제조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원료 또는 제품 및 그 부분품의 세정시설
- (나) 탈색시설
- (다) 발효시설
- (라) 증류시설
- (마) 침전 또는 여과시설
- (바) 도축시설

(7) 섬유공업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염색시설
- (나) 정련시설
- (다) 표백시설
- (라) 세모시설
- (마) 축적시설
- (바) 수지가공시설

(8) 팔프 종이 또는 종이 가공품 제조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증해시설
- (나) 표백시설
- (다) 초지시설
- (라) 여과시설
- (마) 습식 섬유판시설
- (바) 세로판 재막시설

(9) 판유리,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시설중 다음의 시설

- (가) 유리연마시설
- (나) 성형가공시설

(다) 혼합시설

#### 다. 소음 및 진동

- (1) 압연기 (동력합계가 30HP이상)
- (2) 연마기 (2대이상공구용제외)
- (3) 압축기 (동력10HP이상)
- (4) 송풍기 (동력10HP이상)
- (5) 변속기 (동력20HP이상)
- (6) 분쇄기 (동력10HP이상 파쇄기 및 마쇄기 포함)
- (7) 단조기 (동력10HP이상)
- (8) 제분기 (동력10HP이상)
- (9) 절단기 (동력 5HP이상)
- (10) 푸레스 (기계 및 액암푸레스)
- (11) 선반기계 (동력 5HP이상)
- (12) 직 기 (10대이상) 및 방적기계
- (13) 공업용 동력재봉기 (20대 이상)
- (14) 제재기 (동력20HP이상)
- (15) 인쇄기 (원동기를 사용하는것)
- (16) 자동제병기
- (17) 발전기 (120kw/시간 이상, 다만 수력 및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 별표 3. 배출허용기준

##### 가. 가스 및 먼지

오염물질	피해지점 허용농도	배출 허용농도	참 고
암 모 니 아	40ppm	600ppm	
일산화탄소	40ppm	3,000ppm	
염 화 수 소	2ppm	60ppm	
염 소	0.5ppm	50ppm	
황화산화물	1.5ppm	3,000ppm	SO <sub>2</sub> 로 환산함
질소산화물	1.5ppm	250ppm	NO <sub>2</sub> 로 환산함
이황화탄소	7ppm	120ppm	
불소화합물	1.0ppm	10ppm	F로 환산함
포름알데히	2.0ppm	70ppm	
황 화 수 소	4ppm	150ppm	
비소화합물	0.03ppm		AS로 환산함
벤젠화합물	15ppm		C <sub>6</sub> H <sub>6</sub> 로 환산함
페놀화합물	4ppm		C <sub>6</sub> H <sub>5</sub> OH로 환산함
크롬화합물	0.05mg/m <sup>3</sup>		cr로 환산함
시안화합물	2mg/m <sup>3</sup>		CN로 환산함
인 화 합 물	0.4mg/m <sup>3</sup>		P로 환산함
먼 지	10	2g/m <sup>3</sup>	
검	50mg/시간 25mg/m <sup>3</sup>	1.2g/m <sup>3</sup>	

(주) 1. 측정장소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배출구 또는 피해발생지점으로 함.

2. 피해지점허용농도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밖에서 검출된 수치를 말함.
3. 배출허용농도는 공장 또는 사업장내의 연돌및 배출구에서 검출된 수치를 말함.
4. 측정방법은 공정시험방법에 의함.
5. 배출허용농도의 수치는 표준상태때의 농도임.

## 나. 매 연

링겔만(RINGEL MANN)비락표 2도이하. 다만, 접화 또는 화층정비를 할 때에는 11월부터 2월까지에는 1시간에 6분이상, 3월부터 10월까지에는 1시간에 4분이상 흑연을 계속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폐 수

지역별 업종별	오염물질		PH	C. O. D. mg/l	B. O. D. mg/l	부유물질량 mg/l	유기함유량 mg/l	해놀루함유량 mg/l	시안함유량 mg/l	크롬함유량 mg/l	온도℃
	1인당권역출량(㎡)										
화 학 공 업	가	20 이상	5~9	1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1.5 이하	1 이하	2 이하	35℃이 하이어 야 한 다.
	나	30 이상	5.8~8.6	15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30 이하	5 이하	10 이하	
	다	50 이상	5~9	3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10 이하	20 이하	
	라	100 이상	5~9			200 이하	50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제 철 업 제강또는압연업	가	20 이상	5~9			100 이하	20 이하	1.5 이하	1 이하	2 이하	
	나	30 이상	5.8~8.6			150 이하	50 이하	30 이하	2 이하	10 이하	
	다	50 이상	5~9			30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10 이하	20 이하	
	라	100 이상	5~9			150 이하	30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금속 금속제품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	가	20 이상	5~9	1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1 이하	2 이하	
	나	20 이상	5.8~8.6	15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2 이하	10 이하	
	다	30 이상	5~9	3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20 이하	
	라	100 이상	5~9			150 이하	50 이하		2 이하	2 이하	
석유제품제조업	가	30 이상	5~9	1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1.5 이하			
	나	50 이상	5.8~8.6	15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30 이하			
	다	50 이상	5~9	3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라	100 이상	5~9			200 이하	100 이하	2 이하			
피혁제품제조업	가	20 이상	5~9		20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1 이하	2 이하	
	나	30 이상	5.8~8.6		300 이하	200 이하	30 이하		2 이하	10 이하	
	다	50 이상	5~9		600 이하	300 이하	5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라	100 이상	5~9			300 이하	30 이하		2 이하	2 이하	
식료품 제조업	가	30 이상	5~9		1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나	50 이상	5.8~8.6		20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다	100 이상	5~9		3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라	200 이상	5~9			300 이하	50 이하				
섬 유 공 업	가	30 이상	5~9	150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나	50 이상	5.8~8.6	150 이하	20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다	100 이상	5~9	3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라	200 이상	5~9			300 이하	50 이하				
발루중이 및 중 이가공품제조업	가	200 이상	5~9		150 이하	100 이하					
	나	300 이상	5.8~8.6		200 이하	150 이하					
	다	500 이상	5~9		300 이하	400 이하					
	라	1,000 이상	5~9			300 이하					
판유리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제 품 제 조업	가	100 이상	5~9			100 이하					
	나	200 이상	5.8~8.6			150 이하					
	다	300 이상	5~9			300 이하					
	라	500 이상	5~9			200 이하					

(주)

1. 이 표의 “가” “나” “다” “라” 지역은 부표의 지역을 말한다.
2. 업종별은 별표2 “나”항의 시설을 가진 업종을 말한다.
3. 폐수의 채취 및 시험방법은 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보 정 표

별표 3. 다의 부표

지역별	지 역 의 범 위
가. 지역	수도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 보호 구역 및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음료수의 수원 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 정하는 지역
나. 지역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 장 또는 도지사가 농업 또는 환경 용수 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 정하는 지역
다. 지역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 리구역으로서 종말처리장(중급처리시설 이 상)이 있는 지역
라. 지역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 장 또는 도지사가 환경 및 수산 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하는 지역

라. 소 음

실측지 dB(A)에서 5를 뺀 후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소음평가치(NRN)가 40이하일 것.

마. 악 취

공기회석법 또는 식염수 평형법으로 측정하여 피해지점 허용농도가 30이하일 것

바. 기 타

- (1) 별표 3 (배출허용기준)에 기재된 수치 이하라 도 공해를 야기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 는 그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공해를 야기 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2) 이 표에 기재된 항목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 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제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보정치
충격음	충격음	+ 5
	비충격음	0
반복음	연속 또는 1분 1회	0
	시간당 10~60회	- 5
	시간당 1~10회	-10
	일 당 4~20회	-15
	일 당 1~4 회	-20
	일 당 1 회	-25
습관성	습관화되지 아니함	0
	약간 습관화 되었음	- 5
	완전히 습관화 되었음	-10
시간및 계 절	주간: (공업, 준공업지역 7시부터 23시까지, 기타지역 8시부터 20시까지)	- 5
	야간: (공업, 준공업지역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기타지 역 20시부터 다음날 8시까 지)	+ 5
	겨울철: (11월부터 4월 까지)	- 5
	여름철: (5월부터 10월 까지)	0
지역별	농 촌	+ 5
	녹지지역	0
	주거지역	- 5
	상업지역	-10
	공업 및 준공업지역	-15

- (주) 1. 측정지점은 소음발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의 장 애물이 없는 지점에 지상고도 1.5m 내외의 높 이에서 수회 측정한 후 최고수치를 택한다.  
2. 지역별 구분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다.

(서식만은 생략합니다)